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08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김 윤 · 박용갑 · 이수진
김 현 · 윤준병 · 이주희
서미화 · 장철민 · 김우영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을 반영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어서, 실제 부담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 ----- ----- -----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 ----- ----- -----재산보험료부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u>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u>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기준액을</u>----- ----- ----- ----- -----. ② ----- -----<u>재산보험료</u> <u>부과기준액의</u>----- ----- -----.
---	---